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93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강경숙 · 김재원 · 김선민
차규근 · 서왕진 · 김준형
박은정 · 신장식 · 황운하
백승아 · 진선미 · 김문수
김준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원아의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파악되는 등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운영 중단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에”를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13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
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13조제1항에----- ----- ----- ----- ----- ----- -----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 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신설>	
<신설>	

② (생 략)	<u>영유아 지원 계획</u> ② (현행과 같음)
---------	--------------------------------